개인정보 규제완화
향후과제 및 해결방안 토론회

2019. 12. 23.(월) 10:30~11:30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주최 | 이채익 국회의원 컨슈머워치

후원 | 행정안전부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규제완화
향후과제 및 해결방안 토론회

2019. 12. 23.(월) 10:30~11:30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주최 | 이채익 국회의원 컨슈머워치

후원 | 행정안전부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토론회 개요

「개인정보 규제완화 향후 과제 및 해결방안」 토론회 개요

1 토론회 개최 취지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규제완화 이후 어떤 과제가 남아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서 대한민국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행사명 : 「개인정보 규제완화 향후 과제 및 해결방안」 토론회

❑ 일 시 : 2019. 12. 23(월), 10: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 주 최 : 이채익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컨슈머워치

❑ 후 원 :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3 세부일정

구분	시간	주요 세부일정	비고
개회식	10:30~10:35 (’ 5)	개 회 선 언	사회자
		국 민 의 례	
	10:35~10:40 (’ 5)	참 석 내 빈 소 개	사회자
		개 회 사	이채익 국회의원
발제 및 토론	10:40~11:30 (’ 50)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발전방향	KISA 오용석센터장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데이터 정책 분야의 변화	NIA 이헌중본부장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행정안전부 정영수사무관
		· 토론 및 Q&A	
폐회	11:30~	폐 회 선 언	

개 회 사

개 회 사

국회의원 **이채익**(울산 남구갑)

안녕하십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울산 남구갑 출신 국회의원 이채익입니다.

‘개인정보 규제완화 향후 과제 및 해결방안’ 정책토론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가 있기까지 수고해주신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제를 맡아주신 행안부 정영수 사무관님, 한국인터넷진흥원 오용석 센터장님, 한국정보화진흥원 이헌중 본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개인정보 규제완화, 어떻게 할 것인가-금융·유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향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지금, 정책토론회 이후 개정에 힘을 얻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1월과 12월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각각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아직 개정의 길목에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해외 각국은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로 산업을 변화하고 있고, 각 국가는 데이터 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선언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19년에 발표한 빅데이터 이용과 분석에 관한 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3개 조사 대상국 중 40위로 뒤쳐져 있습니다. AI, IoT, 빅데이터 등 데이터 산업을 위해서는 이들을 학습시킬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2018년 데이터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산업현황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빅데이터 미도입의 주요한 이유로 관련 데이터의 부재를 꼽았습니다. 발전에 필요한 원유를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데이터 산업이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산업 발전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원유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산업에 필요한 원유는 개인정보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제가 필요합니다. 즉, 데이터 활용 방안을 고민함에 앞서 개인정보의 활용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불이익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제도적 고민들도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쪼록, 다시 한번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찾고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하루빨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회 자료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발전 방향

오 용 석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이용기술지원센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발전 방향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이용기술지원센터 오용석

금요일 대학생 A씨의 등굣길. 대학생 A씨는 집을 나서기 전 “오늘 날씨 알려줘!” 라고 묻습니다. “오늘은 우산을 꼭 챙기세요” 라는 대답에 A씨는 신발장에서 우산을 꺼내 가방에 넣고, 핸드폰으로 버스 몇 분 후에 오는지 확인한 후 집을 나섭니다. 오늘도 만원인 버스에 탑승한 후 A씨는 좁은 공간에서 겨우 핸드폰을 꺼내 “기분 좋아지는 노래 틀어줘~” 라고 말한 후 선곡되어 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잠시라도 등굣길의 고단함을 달랩니다. 한 주의 끝인 금요일 밤엔 친구들과 홍대에서 만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올빼미 버스를 타고 귀가를 하고, 주말엔 늦잠을 자고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넷플릭스(Netfilx)를 켜고 추천된 영화를 한 편 보며 주말의 여유를 즐깁니다.

평범한 듯 보이는 대학생 A씨의 생활엔 개인정보의 활용으로 인한 우리 생활의 변화들이 숨어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기술들은 이미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잡아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고, 해외 주요국과 기업들은 이러한 기반이 되는 AI, IoT, 빅데이터 등 데이터 서비스·신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에 대표적 데이터 기업 7개(애플, MS,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포함('19. 2월 기준)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데이터 경쟁 속에서 기술 발전을 이끌기 위해 2018. 11월 관계 부처들이 함께 그 초석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호해야하는 정보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하기 위해 개인정보 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가명

처리 및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초연결 시대에서 데이터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결합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정보는 21세기의 원유라 불리울 정도로 데이터 산업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주요 자원이 되었지만, 개인정보는 개인 신원에 관한 여러 정보들이 포함되어있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보호를 위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명처리는 이러한 보호의 측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적 안전 조치입니다. 즉, 직장인 A씨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A씨와 비슷한 연령, 성별 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주로 듣는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이름, 연령, 성별, 음악 취향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누군가 처리하게 되면 그 정보를 보는 사람이 개인의 정보와 취향을 알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개인을 바로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들을 제거하거나, 다른 정보로 대체하고 실제 분석에 필요한 정보들만 분석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며칠 전 차가 강에 추락했을 때 “Hey Siri, call 911” 한 마디로 목숨을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추락하는 도중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휴대폰을 찾아보려 했지만 찾을 수 없어 Siri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강으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음성 인식 과정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의 음성 분석을 통한 음성 인식 기술의 발전에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술로 인한 혜택 뒤에는 AI 스피커를 통해 어떠한 내용들이 수집되고 이용될지 모르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AI 스피커에 대한 전면적 사용 금지를 주장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야할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안전 장치입니다. 수집되는 목소리, 내용 그대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변조하고, 개인정보가 문제되는 부분은 삭제하는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어떤 내용들이 어떠한 형태로 이용되는지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들을 법에 담아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한 보호장치 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초연결·융합 시대라 불리우는 만큼 정보는 결합됨에 따라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인사이트(Insight)들을 찾아내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금요일 밤엔 친구들과 늦게 까지 회포를 풀고 돌아가고 싶지만 집이 먼 A씨는 막차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 시계를 계속 확인하다가 아쉽게도 막차 시간에 맞춰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서울시는 심야 시간 때 승·하차 정보와 통신사의 심야 시간 통화기록을 분석하여 심야 시간 때 이동 수요가 많은 지역을 파악하였고 그 지역에 심야 버스 노선을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주부 등 금융 이력이 없는 사람들은 신용등급이 없어 대출을 못 받거나 받더라도 고액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했지만, 휴대폰 정보 등 비 금융권정보와 결합을 하게 되면 금융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개인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게 되어 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이종 간의 정보 결합은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신산업·서비스를 개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제한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가 지정 전문기관을 통해 이종 정보 결합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어 이러한 정보들을 안전하게 결합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계적인 IT 자문기관 가트너(Gartner)는 2020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로 초자동화(Hyperautomation), 다중경험(Multiexpererience), 전문성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Expertise), 인간 증강(Human Augmentation), 투명성 및

추적성(Transparency and Traceability), 자율권을 가진 엣지(The Empowered Edge), 분산형 클라우드(Distributed Cloud), 자율 사물(Autonomous Things), 실용적 블록체인(Practical Blockchain), 인공지능 보안(AI Security)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들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의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8년 420억 달러에서 2027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2018~ 2027년의 연평균성장률(CAGR)이 10.48%로 향후 10년간 두 자리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2018 데이터산업백서 p.111, 한국데이터진흥원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 활용의 초석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 한국의 빅데이터 이용과 분석과 관련한 순위는 2018년 63개국 중 31위에서 2019년 40위로 9단계 하락*하였습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산업 현황 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 이렇게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관련 인력 부재와, 관련 데이터 부재로 파악이 됩니다*. 즉,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 하고 싶어도 그 근본이 되는 인력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산업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2018 데이터산업현황조사 p.157,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 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2018 p.104, 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2018 2019 p.104

월요일 직장인 B씨의 출근길. 아침 7시 알람이 울리고 직장인 B씨는 아직 단잠에 빠져 있지만, 침대는 그대로 차로 이동하여 회사 앞에 B씨를 내려주고 B씨는 차에서 내려 회사로 갑니다. B씨의 퇴근길. B씨는 보고 싶던 책을 꺼내 읽으며 운전석에 앉아 귀가를 합니다. 밀리는 퇴근길이지만 B씨의 차는 쌩쌩 달립니다. 차가 운행하는 도중 갑자기 아이가 공을 잡으러 길에 뛰어들었지만 차는 아이를 보고 멈췄고, 아이는 안전하게 공을 가지고 도보로 이동을 합니다. TV 광고에서나 볼 수 있는 생활

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향유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사망한지 이제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애플은 기존에 없던 스마트폰을 만들고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 시켰습니다. 지금 애플의 아이폰보다 더 좋은 성능의 스마트폰들이 많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아이폰이 출시되면 며칠 동안 줄을 서서 기기를 사고, 열광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있던 생각의 틀을 깨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낸 혁신의 선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길 바란다면 기존의 가치들과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올해 11월과 12월 작년 11월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행안위와 과방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통해 법안 통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속히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삶의 변화를 이끄는 움직임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 토론회 자료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데이터 정책 분야의 변화

이 헌 중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본부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 데이터 정책 분야 변화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본부장 이헌중

❑ 데이터 정책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사항

○ 개인정보의 개념 체계 명확화

- 개인정보의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고 개인정보 및 가명정보의 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개념 명확화

①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3) 가명정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

② 가명정보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가명처리)한 정보로서 가명처리의 기준과 방법 등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

※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

③ 익명정보 : 개인정보 또는 가명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 가명정보 이용목적 확대 :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의 이용·제공 가능

-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 가능

* 개인정보 수집정황, 민감정보, 정보주체 영향, 안전조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관련성을 판단하고 안전성 확보조치의 세부내용은 하위법령 위임

- 정보집합물 간 결합 근거 마련 :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되, 재식별 방지를 위해 엄격한 보안 시설을 갖춘 지정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데이터 정책에 주는 긍정적 예상 변화

○ **(공공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추어 제공 대상 및 활용 범위 확대**

- 현재, 공공데이터법상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개인정보 포함)는 개방에서 제외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 가명정보를 제공대상에 포함하고, 개보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정책 추진 가능
- 개보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개보위)을 기반으로 금융, 의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데이터의 가명화를 통한 제공 및 활용 촉진 가능

※ 2018년 전수조사시 공공기관 보유데이터 42만개 중 개인정보 사유로 비개방으로 응답한 데이터가 12만5천여개(전체 데이터의 약 30%에 해당)

- 수요가 높고 비식별화(가명화) 가능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지원 사업 등 체계 마련 노력 가능

※ 품질진단, 데이터표준화 등 컨설팅 및 관련 사업 및 예산 지원 등

○ **(민간분야) 신약개발, 치료 연구 등 과학적 연구 등에 데이터 제고 및 활용 가능**

○ **(비식별화지원)** NIA는 정보통신분야 비식별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비식별화 업무를 추진 하기 어려웠음(시민단체 저항)

* 첨부 분야별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 참고

- 개보법 개정시 비식별화 지원업무를 좀 더 공식화하여 추진 가능하고 필요시 공공데이터 분야 비식별화 지원도 검토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아쉬운 점

○ **개정안에서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가 한정되어 비즈니스 등에서의 개정 효과는 미지수**

- 가명정보가 통계,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으로 한정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와 행정에서의 활용을 위한 제공 및 활용은 한계 내포

※ 공공정책의 수립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익적 활용 등은 퍼소 활용범위에 포함 필요

○ **가명정보화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으로 위임되어 있어 공공 및 민간이 실질적으로 가명화를 통한 제공에 적극적일지 미지수**

붙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관련 현황**

○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표('16.6)**

*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방통위, 금융위,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 기준과 지원·관리체계 제시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 지정**

-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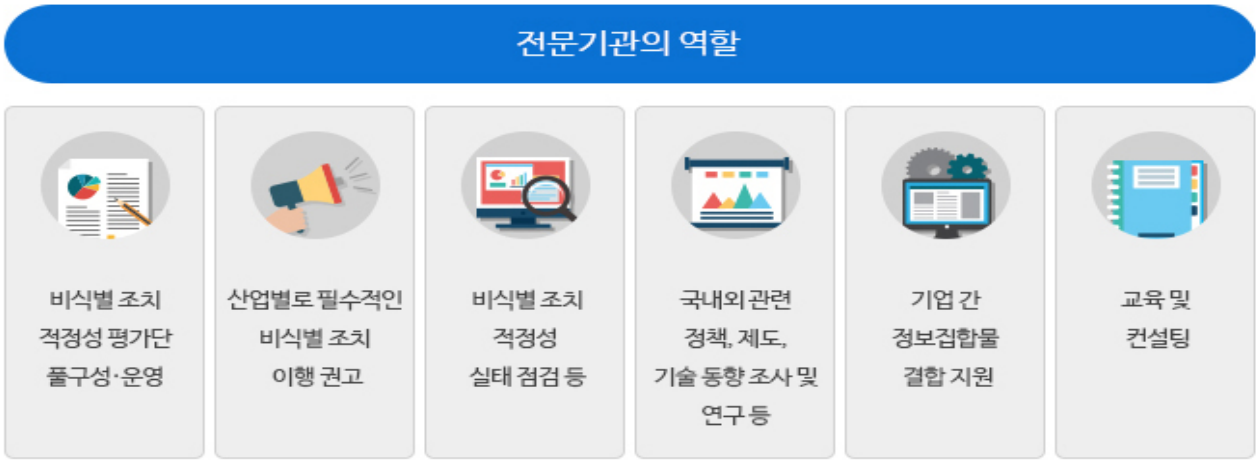

- 분야별 전문기관

분야	소관부처	전문기관
공공분야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방송통신, 정보통신분야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 기타 산업 분야	과기정통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 핀테크 분야	금융위원회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보건복지분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교육분야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토론회 자료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정 영 수
행정안전부 사무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 사무관 정영수

Ⅰ 추진 배경

○ 블록체인, AI,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예) 도로교통공단·자동차회사·통신사가 각각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자율주행차에 활용

○ **일원화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통해 **기업의 준법 부담 완화 및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

※ (현재) 항공사가 항공권의 오프라인 판매 시 보호법 적용, 온라인 판매 시 정통망법 적용

○ **EU GDPR 적정성 결정**의 **필수 조건인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

※ 향후, 적정성 결정 시 유럽 진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수집한 EU시민의 개인정보를 의무적인 기업규칙 혹은 별도의 계약 등 없이 국내 본사로 이전 가능

※ 일본의 경우, 최근 적정성평가 통과('19.1.23)로 데이터 이전에 있어 한국기업보다 유리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시급**

- (정부) 제4차산업혁명위 3차 해커톤('18.4)을 통해 가명정보 정의, 활용범위 합의 및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 제기
- (산업계) EU・일본・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로 인한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산업 추진에 어려움 호소

  *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주요 24개국 중 19위(무역협회, '17년)
- (시민사회) 개인정보보호 및 적정성 평가를 위해 보호체계 일원화 주장
- (국회) "보호위를 독립기구로 위상강화 해 전향적인 정보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특별권고(제4차산업혁명특위, '18.5.28)

Ⅱ 그간의 경과

○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11.3) 및 시행('11.9.)

○ 19대 국회('12.4.~'16.4.)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률은 임기만료로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관계부처 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시행('16.6.)

※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 후 결합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고발조치('17.11.)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내용>

▸(목적) 기업들이 비식별 조치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제시

▸(내용) 비식별 적정성 평가를 거친 경우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이용 가능

▸(절차) ①사전검토 : 개인정보인지 검토 후, 아닌 것이 명백하면 법적 규제없이 자유롭게 활용 → ②비식별조치 : 개인식별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 또는 대체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 → ③적정성평가 : 개인식별 여부를 전문가 집단을 통해 평가 → ④사후관리 : 안전조치, 모니터링 등

○ **국정과제로 개인정보보호위 위상강화** 및 관련 **법 체계 정비** 채택('17.7.)

※ 필요성 : ①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다수기관에 분산**되어 **효율적·체계적** 추진 **곤란,** ②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 ③ EU GDPR 적정성 결정 대응

<현행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구 분	개보위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교육부, 복지부 등
근거법률	개인정보보호법(행안부 소관)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책대상	공공 및 민간부문 (통신사업자, 금융기관 제외)		통신사업자	금융기관	각급학교, 의료기관 등
주요기능	보호정책 심의·의결	정책수립 및 조사·처분	소관분야 정책수립, 조사·처분		소관분야 관리 (조사·처분 : 행안부)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 **자유토론**('18.2., 4.)

※ (주요 논의·합의 사항)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 가명정보를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통계(상업적 목적 포함) 목적 처리 허용, 개인정보 수집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경우 추가적 처리 허용, 데이터 결합의 법적 방식 구체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안 마련

○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특별권고**('18.5.)

- ① 개인정보·가명정보 개념 구체화, ② 가명정보를 산업적 연구와 상업적 통계 허용, 데이터 결합 근거를 법률에 마련 ④ 보호위 위상강화

○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18.5.~)

※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 가명정보 개념 도입 방안, 데이터 결합 방안 등

○ **시민단체·산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실시

※ 산업계 간담회('18년 3차례), 시민단체 간담회('18년 5차례)

○ **대통령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시 개인정보 규제개선방안 보고 ('18.8.31.)

<주요 보고내용>

①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배제 명시
②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데이터(가명정보) 개념 도입
③ 가명정보 이용 목적을 산업적 연구를 포함하도록 확대
④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마련 (국가지정 전문기관에서 수행)
⑤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 및 재식별 금지 의무 부과
※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등 감독체계 효율화 방안 검토

○ 행안위 법안 소위 시, 기 발의 법안 논의('18.8.22.) 및 행안부 의견 설명('18.9.11.)

○ 개인정보보호법(인재근 위원장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노웅래 위원장 대표발의),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의원입법 발의**('18.11.15.)

○ 행안위 법안소위 의원 등 설명

※ 국회 토론회(김한정 의원, 11.14. / 이상민 의원, 11.23.), 행안위 및 과방위 설명(10월~12월)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안) 법안소위 회부('18.11.28.)

○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빅데이터 소위

※ 데이터 규제 개선 논의('18.12.19.), 거버넌스 개선 논의('18.12.21.)

○ 행안위 법안 소위'19.4월, 9월, 10월, 11월) 및 전체회의 통과('19년 11월)

○ 국회 차원 논의 지속(다수, 이채익 의원실 '개인정보 규제완화' 어떻게 할 것인가? '19.8.21.)

○ 국회 법사위 계류('19년 11월)

※ 법사위에서는 정보통신망법도 함께 통과되어야 함을 이유로 계류, 정보통신망법은 12월 4일 과방위 통과

Ⅲ 주요 개정 내용 및 기대효과

1 가명정보 도입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 제고

○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 도입

※ 가명정보란 추가 정보와의 결합 없이는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정보

○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명정보 처리 허용 (EU GDPR 수준)

○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기업 간 데이터 **결합** 허용

< 기대효과 >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된 **가명정보를 산업적 연구 등 목적으로 처리(결합 포함)**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스마트시티·핀테크 등 **새로운 산업 및 서비스 창출 확대**

☞ **가명정보를 활용한 상업적 목적의 통계처리**

- (주)**은 회원이 구매한 물품의 연령·성별 선호 색상, 기능 및 가격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 백화점·마트 등 유통경로별 상품판매 전략을 수립

☞ **가명정보를 활용한 산업적 목적의 과학적 연구**

- ○○회사는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맥박, 운동량, 평균 수면시간 등에 관한 정보와 이미 보유한 성별, 연령 정보, 체중을 가명처리하여, 연령·성별 체중 관리를 위한 운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운동관리 앱 등을 개발

☞ **보안 공간에서의 가명정보 결합**

- 보험사 보유 운전보험 정보와 통신사 보유 운전습관 정보를 결합하여 운전습관별 보험요율을 산출

2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합리화

○ **당초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가능

*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정황, 개인정보의 민감 정도, 정보주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효과, 적절한 안전조치 존재 여부 등을 고려

< 기대효과 >

수집목적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해석하여, **서비스 제공 단계별로 추가 동의를 받아야하는 기업 불편 해소**
정보주체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동의를 해야 하는 부담 경감**

☞ A 상품 배송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B 상품 배송을 위해서 이용 가능

☞ 병원이나 약국에서 처방전이나 약을 잘못 가져가면 해당 사실을 해당 환자에게 알릴 목적으로 휴대전화번호 이용 가능(약국 등 문의)

3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 **(개인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의 기준 신설

- 다른 정보의 **입수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익명정보)** 익명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법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기대효과 >

법 적용대상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법 적용대상을 보다 쉽게 이해**(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

☞ IMEI(단말기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업체가 다른 정보의 입수가능성이 없더라도 기술적으로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 관련,

- 학계와 업계 등은 자기도 모르게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 법이 개정되면 이러한 불확실성 해소 가능

4 개인정보보호 체계 일원화

○ 보호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분산된 **감독 기능 일원화**

※ 행안부와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 기능 전부, 금융위의 일반상거래기업 조사·처분권을 보호위 이관

○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의 중복규제 정비로 **법체계 일원화**

< 기대효과 ① >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보호위, 행안부, 방통위 등으로 분산되어 초래하는 **규제경쟁 감소** 및 이중감독에 대한 **수범자 혼란 해소**

<동일업종에 대하여 두 개의 규제기관이 처분한 사례>

구 분	00항공	ㅁㅁ항공
소관(법령)	•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법)	•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	• 동의 위반(보호법 제22조제3항) • 안전조치 위반(보호법 제29조)	• 안전조치 위반(망법 제28조)
처 분	• 과태료 1,200만원(2016.8.12.)	• 과태료 1,000만원(2016.10.20)

< 기대효과 ② >

보호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인사·예산, 조사·처분권)로 **EU 적정성 평가의 핵심적 요건 충족** * 그간은 독립성 부족을 이유로 진행되지 않음

☞ EU GDPR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별도의 요건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음

- 현재에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EU 당국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절차(의무적 기업규칙, 표준계약 등)**을 거쳐야 함

Ⅳ 향후 계획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등 정비

○ **법령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 개정법에서 위임한 내용* 및 망법 시행령에서 이관되는 사항 반영**

* 합리적 관련 범위 기준, 가명처리 및 데이터 결합 절차·방법, 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특례에 반영

②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정** * 현 「보호위원회규정」은 폐지

③ **공무원임용령*** **개정**

* 임용권을 갖는 '소속장관'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장 포함 등

※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 기능 이관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조항 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부칙에 포함되어 개정됨

○ **행정규칙 제·개정**

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고시) 개정

② 행안부, 방통위의 동일·유사한 행정규칙은 **보호위 고시로 통합**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부령) 폐지 후 보호위 고시 제정**

④ 기타 '행안부장관 →보호위'로 **기관명칭 변경 개정**

※ '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행안부 훈령) 폐지

□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정비 * 現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심으로 추진

○ **위원회 구성**

- 보호위 위원은 **총 9명**(대통령 임명·위촉 4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국회 추천5(여2, 야3))으로 구성

○ **사무처 설치**

- 조직 정비, 기존 행안부·방통위 인력 이체, 예산 이체, 시설 확보 등

□ 한-EU 적정성 평가 추진

○ **(경과)** '19.3월, 전체 적정성으로 전환한 후 원활한 협의 진행 중

- '16~'18년 중 2차에 걸친 한-EU 적정성 평가 추진 시도가 중단됨에 따라 행안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하는 전체 적정성으로 전환

  * EU의견 : (1차) 행안부는 감독기구 독립성 부족, (2차)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범위 협소

- 전체 적정성으로 전환 후 매월 화상·대면회의 등 원활한 협의 진행 중

  * 화상회의 8회(3.21, 4.10, 5.14, 9.2, 10.29, 11.11) 대면회의 2회(서울, 6.5~6, 7.15~17.),

○ **(진행현황)** EU집행위 적정성 초기결정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

- EU는 그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한 후 초기결정문 초안 작성('19.10월) 및 수정·보완 중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점(본회의 통과)에 EU집행위 초기결정 및 공포·시행 시점에 한-EU 적정성 최종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 12.5(목), 미하엘 라이어터 주 EU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독립적 감독기구 규정이 마련되면 적정성 결정이 곧 완료"될 것으로 전망(헤럴드 경제 등)

○ **(향후계획)** 화상회의, E-메일 등을 통해 한-EU간 긴밀한 협의체계 유지, 법 개정 완료 시 적정성 결정 공동성명 발표 등 추진

< EU 적정성 평가 개요 >

○ EU가 상대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적정성을 평가(GDPR* 기준)하는 제도

- EU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기업은 표준계약 체결 등 개별 기업의 행정부담 없이 EU주민 개인정보를 자국으로 이전 가능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유럽 전역에 통합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18.5월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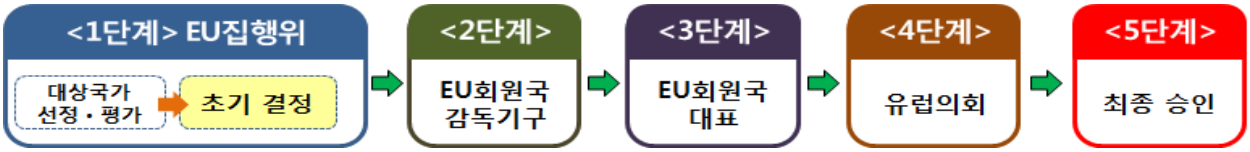

□ 개인정보 보호법 추가 정비

○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 내 정합성 제고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간 규제수준 등 정비
-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체계 및 용어 등 정비

○ 개정법 운영사항 지속 점검 및 보완 필요사항 점검·마련

- 가명정보 처리 실태 및 활용도 설문 등 개정법 운영현황 점검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및 신고 시 점검과 병행

- 개정법 보완 필요사항 사항 발견 시, 개선방안 마련

○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강화

- 프로파일링 대응권, 개인정보이동권 등 EU 법제에 있는 사항 중 한국의 경제·사회 특징을 고려하여 법제 반영 필요사항 검토

금 번 법 개정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결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내딛는 계기로 이해하고, 보다 나은 제도 마련을 위해 국민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고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참고 1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정책권고 및 입법권고

[정책권고] (5건)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중복조항을 정비하고,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실시**할 것

②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터주되 그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재식별**화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재식별되는 데 소홀했을 경우 강력한 **사후 처벌 방안**을 마련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

③ 강력한 사후 규제를 전제로 익명가공정보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일본 기준을 참고해 개인정보 활용 수준을 검토**할 것.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안심시킬 수 있는 홍보 대책을 마련하고, **해외의 성공한 사례 중 개방적인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⑤ 현행 법률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것

- 개인정보 활용의 이익형량에 관한 규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중 "명백하게"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석 조치 필요

[입법권고] (4건)

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률에서 **개인정보·가명정보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할 것 (개정안 제2조제1호)

- 가명처리(가명화, 가명조치 등) 및 가명정보의 개념 정립

② 가명정보 개념을 신설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것

-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 **학술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통계(상업적 목적 포함) 목적의 경우 가명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입법화**할 것 (개정안 제28조의2)

-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 등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 타워를 갖춘 경우에는 **상업적 목적으로 가명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입법화** 할 것 (개정안 제28조의3)

- 단, 가명처리 방식·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가명정보 자체의 식별가능성을 차단하고,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활용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재식별화 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재식별되는 데 소홀한 경우, 강력한 **사후적 처벌 강화 조치**를 전제로 함 (개정안 제28조의4)

③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의 결합을 추진할 기관에 대한 근거를 가이드라인(현행)이 아닌 법률로 규정**할 것 (개정안 제28조의3)

④ 행정안전부 산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위상을 강화해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총괄하고 전향적인 정보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개정안 제7조 등)

참고 2 제1차·제2차 해커톤 논의 및 합의 내용

1 1차 해커톤 (18.2.2)

구 분	주 요 내 용
□ 목 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방안 마련
□ 토론자	o **(의제리더) 이상용(사회제도혁신위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o (4차위) 문용식(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o (법조계) 고학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환경(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 손도일(법무법인 율촌 파트너변호사) o (시민단체) 김보라미(경실련 변호사),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 이은우(정보인권연구소 변호사), 양홍석(참여연대 변호사) o (산업계) 김기태(파수닷컴 부장), 김정선(SKT 부장), 이욱재(코리아크레딧뷰로 본부장), 최재원(다음소프트 이사) o (정부·공공기관) 이재형(과기정통부 과장), 김상광(행안부 과장), 배일권(행안부 과장), 최윤정(방통위 과장), 배상호(개인정보보호위 과장), 손경호(KISA 센터장)
□ 정책 책임자	o (행정안전부) 김혜영 개인정보보호정책관, 박성호 정부혁신기획관 o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보호정책국장 o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상명 사무국장
□ 쟁 점	**1.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적 개념체계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한다,** **※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익명정보'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익명정보'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는 대신 EU GDPR 전문 (26)을 참조하여 '개인정보'의 범위를 보완한다.** **3. '가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4.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한다.**
□ 참고자료	o 익명정보 관련 – GDPR 전문(26) 원문 및 번역본(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가명정보 관련 – GDPR Article4(5), Article5.1.(b), Article6.4., Article25, Article32, Article89.1 원문 및 번역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② 2차 해커톤 (18.4.4)

구 분	주 요 내 용
□ 목 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방안 마련**
□ 토론자	o **(의제리더) 이상용(사회제도혁신위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o (4차위) 문용식(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o (법조계) 고학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환경(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 손도일(법무법인 율촌 파트너변호사) o (시민단체) 김보라미(경실련 변호사),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 이은우(정보인권연구소 변호사), 한석현(서울YMCA 팀장) o (산업계) 김기태(파수닷컴 부장), 김정선(SKT 부장), 이욱재(코리아크레딧뷰로 본부장), 유소영(서울아산병원 부장) o (정부·공공기관) 이재형(과기정통부 과장), 김상광(행안부 과장), 배일권(행안부 과장), 최윤정(방통위 과장), 이한진(금융위 팀장), 배상호(개인정보보호위 과장), 손경호(KISA 센터장)
□ 쟁 점	**1. 가명정보의 활용과 보호** (1)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과 범위 (2) 최초 수집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개인정보 처리 **2. 익명정보의 절차, 기준, 평가 등** **3. 데이터 결합** **4. 개인정보보호 체계**
□ 논의 및 합의내용	**1. 가명정보의 활용과 보호** **(1)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과 범위** o 가명정보는 ①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의 목적, ② [학술 연구 / 학술 및 연구]* 목적, ③ 통계 목적을 위하여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o 이를 위해서는 가명처리를 포함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등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o 위 [학술 연구 / 학술 및 연구]* 목적에는 산업적 연구 목적이 포함될 수 있고, 통계 목적에는 상업적 목적이 포함될 수 있다. * [학술 연구 / 학술 및 연구] : 연구의 범위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참석자 일부는 '학술 연구'라는 표현을, 다른 일부는 '학술 및 연구'라는 표현을 지지하였음. **(2) 최초 수집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개인정보 처리**

구 분	주 요 내 용
	o 정부는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 등 해외 입법례를 참조하여, 가명처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2. 익명처리의 절차, 기준, 평가 등** o 정부는 익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와 기준은 기술적 중립성에 입각한 것이어야 하며, 강제적인 것이거나 최종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o 정부는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정보의 속성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Trusted Third Party)*이나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은 현행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하의 전문기관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3. 데이터 결합** o 데이터 결합은 사회적 후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o 정부는 데이터 결합의 법적 구성방식들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비례하여 사전적 또는 사후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o 구체적 방안에 관한 시민단체 측과 산업계 측 의견은 아래와 같다. **(시민단체 측 의견)** o 세계적으로 민간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연계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정데이터 및 설문조사 데이터에 대한 연계를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기관, 혹은 국가 통계청에 의해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현행 개인정보보호체계 하에서는 민간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연계, 결합은 허용될 수 없다. o 통계청 혹은 관련 전문기관이,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비해 공익적 가치가 큰 연구 및 통계 목적에 한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연계, 결합을 관련 법률 및 UNECE 원칙*에서 규정한 엄격한 거버넌스 체제 하에서 수행할 수 있다. o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획득한 경우, 혹은 익명정보 사이의 결합은 가능하다.

구 분	주 요 내 용
	* UNECE 원칙 : 통계 및 관련 연구목적으로 수행되는 데이터 통합의 기밀성 관련 원칙과 가이드라인 **(산업계 측 의견)** o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 제도를 도입하되, 인가받은 TTP(Trusted Third Party)를 통해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거나 엄격한 안전조치 하에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TTP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TTP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데이터의 제3자 제공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TTP는 결합 키 및 가명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한다. - TTP는 데이터 결합과 결합된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및 가명처리의 적정성 평가의 역할을 한다. - TTP에 대하여 정부의 상시감독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결합과정에서의 관리적 투명성을 확보한다. o TTP에서 결합된 데이터는 가명처리 및 가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거쳐야만 결합을 요청한 정보처리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o 결합된 데이터는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관리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 결합 데이터는 기존 고객정보가 있는 레거시 시스템과 분리 보관하고, 접근 권한을 별도로 부여하여야 한다. - 결합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도 재식별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결합 데이터는 당초 결합목적 내에서만 활용 가능하고, 활용 목적 달성 시 폐기해야 한다. **4. 개인정보 보호 체계** o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은 각 부문에서 고유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중복, 유사 조항에 대해서는 통일적 규율이 필요하다. o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후속조치 요구사항**	o 관계 부처는 위 논의 및 합의사항에 관하여 조속히 입법 및 정책추진할 것을 요청함 o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향후 입법 및 정책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함

부 록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19. 11. 27.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제출)자	발의(제출) 일자	경 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2016.12.8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7.7.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2017.5.11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7.7.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2017.1.12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7.7.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2017.5.30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7.9.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2017.12.8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8.1.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2018.3.5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8.8.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2018.3.5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8.8.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2018.3.9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8.8.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2018.7.2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8.8.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2018.9.20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8.11.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2018.11.15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8.11.2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2018.11.16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8.11.2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2018.11.22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8.11.2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2018.12.14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9.3.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2018.12.31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9.3.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2019.2.11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9.3.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2019.2.20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9.3.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2019.3.20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9.6.2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2019.9.9	국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19.9.23.)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9. 11. 15.)에서 위 19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2019. 11. 27.)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바,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개념 모호성 등으로 수범자의 혼란이 발생하는 등 일정한 한계가 노출되어 왔고,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은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현행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감독기구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각계로부터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줄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도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과징금 도입 등 처벌도 강화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관련 산업의 경쟁력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

히 하고,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하는 가명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을 허용함(안 제2조제1호, 제15조, 제17조 개정, 안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58조의2 신설).

나. 가명정보를 처리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과징금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의4, 제28조의5, 제28조의6 신설).

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한편,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함(안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14까지, 제63조).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국외 이전 시 보호 조치, 국외 재이전, 국내대리인, 손해배상 보험 등 현행법과 상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만 있는 규정을 특례로 규정함(안 제17조, 제18조, 제30조 개정 및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15까지 신설).

4. 소수의견

1) 가명정보 활용 범위를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특정 목적 하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3조제7항 중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항을 심의·의결하기”를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로, “대통령 소속으로”를 “국무총리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조의8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2. 제7조의9제1항의 심의·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제2장에 제7조의2부터 제7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인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인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인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 또는 단체(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4.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제7조의13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제7조의3(위원장) ①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의4(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7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의6(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

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②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7조의7(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7. 제33조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8. 제28조의6, 제34조의2, 제39조의1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9.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7조의10(회의) ①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보호위원회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11(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의12(소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13(사무처)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14(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를 “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에”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부터”를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를 “보호위원회가 고시로”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를 “보호위원회가 고시로”로 한다.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각각 “보호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령으로”를 “보호위원회가 고시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장에 제3절(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

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한다.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

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를 “보호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각각 “보호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각각 “보호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를 “보호위원회에”로, 같은 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보호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보호위원회”로 하고, 제34조의2제1항 본문·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각각 “보호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을 “보호위원회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처리정지 등의”를 “처리정지, 제39조의7에 따른 동의 철회 등의”로 한다.

제39조의2 다음의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제6장(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1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①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5(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 제39조의3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17조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0(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2. 제39조의4에 따른 통지·신고
3.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

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

제39조의13(상호주의) 제3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의14(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특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조 제6호·제9호·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시청자”는 “이용자”로 본다.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①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한 경우
2. 제22조제6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1호(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수집한 경우
4. 제26조제4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특례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9조의 조치(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7. 제39조의12제2항 본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0조 다음의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으로 하고, 제57조 다음의 “제8장 보칙”을 “제9장 보칙”으로 한다.

제9장(종전의 제8장)에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에 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제61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을 “심의·의결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를 “보호위원회에”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를 “보호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각각 “보호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의 “행정안전부장관은”을 각각 “보호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검사권한을 수행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호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이 해당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검사권한을 수행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에게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거나, 처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⑨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의 “행정안전부장관은”을 각각 “보호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의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보호위원회에”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할 수 있다”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보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보호위원회”로,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

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9조 다음의 “제9장 벌칙”을 “제10장 벌칙”으로 한다.

제71조제2호 중 “제18조제1항·제2항”을 “제18조제1항·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27조제3항”을 “제27조제3항, 제28조의2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4의2. 제28조의3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

4의3.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4의4. 제36조제2항(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와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정·삭제 요구 등 필요한 조치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4의5.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의6. 제39조의3제4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제73조제1호의 “제25조제6항”을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제75조제2항제4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21조제1항·제39조의6(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을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29조”를 “제28조의4제1항, 제29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제2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아니한 자

12의2. 제39조의3제3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2의3. 제39조의4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자

12의4.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2의5. 제39조의7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동의 철회·열람·정정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6. 제39조의7제3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와 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12의7. 제39조의8제1항 본문(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12의8. 제39조의12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7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과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의1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39조의12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보관한 자

제75조제4항(종전의 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과”를 “보호위원회와”로 한다.

6의2. 제2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보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보호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보호위원회가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위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보호위원회의 행위 또는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신고 등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행위 중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행위 또는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보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행위나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행위나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7조의3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거나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거나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전문기관은 이 법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를 “전자정부”로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개인정보보호윤리”를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으로 한다.

③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6항제1호 중 “관계 행정기관(「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을 “관계 행정기관”으로 한다.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

에서 이 법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승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의 사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행정안전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

	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보호 원칙) ① ~ ⑥ (생 략)	제3조(개인정보보호 원칙)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7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7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 ①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국무총리 소속으로 ----------. <후단 삭제>
②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제7조의8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신 설>	2. 제7조의9제1항의 심의·의결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삭 제>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5명은 국회가 선	<삭 제>

출하는 자를,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⑥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삭 제>	
⑦ 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⑧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삭 제>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	<삭 제>	

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인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인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인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 또는 단체(개인정

	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4.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제7조의13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신 설>	제7조의3(위원장) ①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4(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신 설>	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

	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7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신 설>	제7조의6(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②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신 설>	제7조의7(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및 전문인

	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신 설>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7. 제33조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8. 제28조의6, 제34조의2, 제39조의1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9.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10(회의) ①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보호위원회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③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7조의11(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12(소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7조의13(사무처)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

	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14(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1의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5.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6. 제33조제3항에 따른 영향평	<삭 제>

가 결과에 관한 사항 7. 제61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8. 제64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 권고에 관한 사항 9.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10. 제67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		

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생 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호위원회는 ---------- ---------- ---------- ----------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의 처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① 보호위원회는 ----------

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 ----------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는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 ② (생 략)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

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 ----------제15조제1항·제39조의3제1항·제2항에 ---- ----------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 --,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삭 제>

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생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② ---------- 보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시로 ---------- ----------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 ③ (생 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 ---------- ---------- ---------- ---------- ---------- ---------- ---------- ----------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 ---------- ----------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 ---------- ----------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 ---------- ---------- ---------- ---------- ----------.
<신 설>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 설>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

	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②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보호위원회에 ----------

에도 또한 같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 ---------- ----------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 ---------- ---------- ---------- ----------.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 ---------- ----------보호위원회에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 ---------- ----------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 ---------- ---------- ----------.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	① 보호위원회는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 ---------- ---------- ---------- ----------. ----------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 ---------- ----------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인증, 제3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심사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 ---------- ---------- ---------- ----------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 ---------- ---------- ---------- ---------- ---------- ---------- ---------- 보호위원회에 ---------- -. ---------- ----------보호위원회가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	⑤ 보호위원회는 ---------- ---------- ---------- ----------

련하여야 한다.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② (생 략)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 ---------- ---------- ---------- 보호위원회 ---------- ---------- ----. ------- 보호위원회 -- ---------- ---------- ---------- --.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보호위원회는 ---------- ---------- ---------- ---------- ---------- ---------- ---------- ---------- ---------- ----------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 ---------- ---------- ---------- ---------- ---------- ---------- ----------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 ---------- ---------- ---------- ---------- ---------- ----------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생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보호위원회를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 처리정지, 제39조의7에 따른 동의 철회 등의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신 설>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개

	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①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9조의5(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 제39조의3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17조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기준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9조의10(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제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2. 제39조의4에 따른 통지·신고 3.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
<신 설>	제39조의13(상호주의) 제3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39조의14(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특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조 제6호·제9호·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시청자”는 “이용자”로 본다.
<신 설>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①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

	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한 경우 2. 제22조제6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1호(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수집한 경우 4. 제26조제4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특례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9조의 조치(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7. 제39조의12제2항 본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

	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8장 보칙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9장 보칙
<신 설>	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제60조(비밀유지 등) ---------- ---------- ---------- ---------- ----------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2.·3. (생 략)	2.·3. (생 략)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① 보호위원회는 ---------- ---------- ---------- ---------- 심의·의결을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 ---------- ---------- ---------- ---------- ---------- ---------- ---------- 보호위원회에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 ---------- ---------- -- 보호위원회에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제2호의 사실 조사·확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 ---------- ---------- ---------- ---------- ---------- ------- .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호위원회는 ---------- ----------

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	④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검사권한을 수행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호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이 해당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보호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검사권한을 수행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에게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거나, 처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⑦ 보호위원회는 ----------

침해사고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 ---------- ----------.
<신 설>	⑧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⑨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보호위원회는 ---------- ---------- ---------- ---------- ---------- ----------

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보호위원회는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 보호위원회에 ----------.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행정안전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

부장관은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	회는 ---------- 공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보호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따라 보호위원회 ---------- 결과를 보호위원회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	③ 보호위원회는 ----------

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 ----------.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목 외의 부분 삭제>
<신 설>	① 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②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10장 벌칙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제71조(벌칙) ----------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의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27조제3항, 제28조의2를 ----------
<신 설>	4의2. 제28조의3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
	4의3.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4의4. 제36조제2항(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와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4의5.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의6. 제39조의3제4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벌칙) ---------- ---------- ---------- ----------.

1.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1. ----------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
<신 설>	1의2. 제21조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생 략)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제39조의6(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
4의2. ~ 4의3. (생 략)	4의2. ~ 4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4. 제28조의5제2항을 위반하

	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 제28조의4제1항, 제29조 ----------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제39조의3제3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2의3. 제39조의4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자
	12의4.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2의5. 제39조의7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동의 철회·열람·정정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6. 제39조의7제3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와 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12의7. 제39조의8제1항 본문(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12의8. 제39조의12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의1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39조의12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보관한 자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2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⑤ ---------- ---------- ---------- 보호위원회와 ---------- ---------- ---------- ---------- ---------- ----------.

개인정보 규제완화
향후과제 및 해결방안 토론회

주최 | 이채익 국회의원 컨슈머워치

후원 | 행정안전부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